

보도참고자료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

보도일시	2015. 12. 7.(월) 조간	배포일시	2015. 12. 4.(금) 16:00
담당과장	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(044-215-4420)	담당자	박찬주 사무관 (044-215-4423) pol83@korea.kr

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(IV)

-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-

-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를 통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였다.
- 기업과세의 일관성 제고, 국제조세기준 남용 방지, 국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1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.
-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,
-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모·자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정보 확보를 통해 강화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(CFC), 이전가격세제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,
 - 또한, 각국 조세우대제도(preferential regime)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 자본유치 경쟁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형태의 유해조세경쟁(harmful tax)의 규제가 용이해 질 것이다.
- 이에 따라 OECD/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거래 투명성 확보 (improving transparency)가 필수적임을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.

- 1 -

- 우선,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국가 간 교환하는 '국가별 보고서' 도입을 이행강제력을 갖는 최소 기준 과제로 제시하였다.
-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을 이용하거나 세무컨설팅을 받는 경우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적 보고제도를 모범사례 (best practice)*로서 제시하였다.

*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 도입이 가능한 권고안

- 또한, 특정기업, 분야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예규(rulings)가 BEPS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.

※ 별첨 : 투명성 확보 과제별 주요 내용

* 국가별보고서는 11.19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고, 나머지 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(박찬주 사무관)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경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

- 2 -

1 공격적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부여(Action 12)

[1] 논의 배경

-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과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이 국제조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
 - 또한, 과세관할을 벗어나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OECD는 과세당국이 공격적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'강제적 보고제도(Mandatory Disclosure Rule)*' 도입을 권고
 - * 조세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개발, 특정거래의 이행, 세무컨설팅 등을 수행한 경우 납세자 또는 조장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
 - 현재 영국 등 8개국에서 시행중인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권고(참고 강제적 보고제도 외국 사례)

- 3 -

[2] 강제적 보고제도의 주요 내용

① 보고 의무자

- 공격적 조세회피거래(ATP)의 조장자(promoter: 다국적 로펌, 회계법인 등) 또는 이용자(taxpayer)가 과세당국에 해당 ATP 보고 의무를 부담
 - 조장자가 없거나, 국외 소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보고의무 부여

② 강제적 보고대상

- 각국의 상황에 맞게 ATP의 특징(hallmarks)을 갖는 세무컨설팅 또는 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강제적 보고 의무 부여
 - 세무컨설팅이 납세자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를 부여하거나(비밀거래), 조장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성공보수가 주어지는 경우(특별수당 지급) 등은 조세회피거래로서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음
 - 사업상 거래 자체가 저세율국에 위치한 자회사를 이용하거나 과세당국이 열거한 조세회피거래유형(black list)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음

③ 보고의무 발생시기

- 세무계획을 통해 조세회피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, 또는 실제 조세회피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시점 등으로 설정 가능

④ 보고의무 이행 강제수단

-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서 해당 거래가 합법으로 인정 받거나 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님
- 다만,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 도입 필요

- 4 -

< 강제적 보고제도 외국사례 >

국가	보고의무자	보고대상 (특징)	보고시기	미보고시 제재
영국	조장자 · 이용자 · 관련거래 이용자	조세회피거래 (비밀거래, 과도한 성공보수 등)	- (조장자)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일 내 - (납세자) 조세회피계획 이행 뒤 즉시 보고	- (penalty) 미보고시 최대 1억만 파운드까지 과태료 부과
미국	자문자 · 납세자	조세회피거래 (blacklist 거래, 비밀거래, 과도한 성공보수 등)	- (자문자) 자문 계약 분기의 다음달 말일 - (납세자) 해당 거래에 참여한 사업연도 과세 표준 신고일	- (penalty) • (자문자) Max(i , ii) (i) 5만~20만불 (ii)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은 총수입금액의 50% (실제 정보 제공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75%)
아일랜드	조장자 · 이용자	조세회피거래 (비밀거래, 과도한 성공보수 등)	- (조장자) 관련 거래를 최초로 판매한 날 이후 5일 이내 - (이용자) 관련 거래를 실행한 날 이후 5일 이내	- (penalty) 지연일수 × 500유로
포르투갈	조장자 · 이용자	조세회피거래 (조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거래 등)	- (조장자) 해당 거래를 최초로 제안한 달 이 후 20일 이내 - (이용자) 시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	- (penalty) • (조장자) 5천~10만유로 • (이용자) 5백~8만유로
캐나다	조장자 · 이용자	조세회피거래 (조세혜택에 연동되는 보수, 비밀거래 등)	- 다음 과세연도 6월30일 까지	- (penalty) 500 캐나다달러 (약50만원)와 관련 상품 으로 인한 이익의 25% 증·금액 - (조세상 혜택의 부인)
남아프리카 공화국	조장자 · 이용자	조세회피거래 (혼성금융상품 · 혼성기업실체를 이용한 거래 등)	- 조세회피거래 보수가 지급된 뒤 45일 이내	- (penalty) • (조장자) 10만란드(ZAR) • (이용자) 5만란드(ZAR)

- 5 -

[3] BEPS 실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(기대효과) 강제적 보고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관련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또한, 조세회피 행위에 이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세정책에 반영
- (이행계획)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른 BEPS 대응조치의 이행효과를 보아가며 '강제적 보고제도' 도입 검토
 - BEPS 대응조치 중 국가별 보고서* 도입이 최소기준 과제로서 국내 입법화가 검토 중에 있으므로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, 및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 신중 검토
 - * 다국적기업의 경영 및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국가간 교환하는 BEPS 대응조치(국가별 보고서 action13)
 - (대응방향)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,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등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 검토

- 6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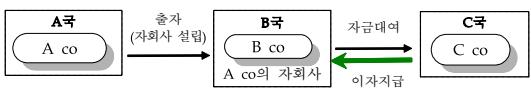
2 유해조세경쟁 제한을 위한 자발적 정보교환(Action 5)

[1] 논의 배경

- 유해조세경쟁포럼(Forum on Harmful Tax Practice)은 각국의 **법제화된 조세우대제도의 유해성***을 평가하고 규제하는데 집중해 왔음
 - * 국제 자본이동을 왜곡시키고 조세경쟁 통해 재정감식 유발
- 그러나 유해성이 없는 조세제도의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세법을 적용·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세제의 유해성이 유발될 수 있음
 - 각국은 예규(rulings)*를 활용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유해조세제도를 운영할 유인이 존재
 - * 과세당국이 개별 사례에 대해서 표명하는 구속력 있는 세법 적용방법

< BEPS 문제를 유발하는 예규 사례 : 혼성 기업실체 관련 >

- **B국에서는** 모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기업(B co)을 예규에 의하여 도관으로 취급
 - A co는 B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중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(C co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하나, A국에서는 이자소득을 B co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불포함, B국에는 이자소득을 A co의 소득으로 처리하여 비과세)
 - B co를 도관으로 취급하는 B국의 예규는 유해조세제도와 유사한 효과



- 따라서 조세혜택 효과를 갖는 예규(rulings)*를 국가간 정보교환 대상으로 지정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필요

- 7 -

[2] 주요 권고 내용

- (정보교환 대상)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규(taxpayer-specific rulings)* 등 5개 범주의 예규를 정보교환의 대상으로 함
 - *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규(general rulings)는 제외(예: 통칙)

- ① 조세우대제도(preferential regime) 관련 예규 : 금융·서비스 등 이동성이 높은 활동에 대한 조세우대제도에 대한 예규

- ② 국제거래에서의 일방적 사전가격승인제도(unilateral APA; Advance pricing arrangement)와 이전가격 분야의 예규(예: ATR; Advance tax ruling)
 - * 일방적 사전가격승인 제도(APA) :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사전적으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결정하는 제도(OECD)

- ③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국제거래 관련 regulation

- * 록셈부르크와 네덜란드의 'informal capital regime'(특수관계자 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본출자로 취급), 벨기에의 'excess profit ruling regime'(특수관계자로부터 이전된 소득을 과표에서 제외) 등이 과세당국의 일방적 과표조정을 허용하고 있음

- ④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여부, 특정 소득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에 대한 예규

- ⑤ 국제거래에서 도관(paper company)에 대한 예규

- (교환 방법) 예규 관련 거래의 당사자 및 모회사 거주지국의 과세당국과 교환

- 자발적 교환대상에는 향후 생산될 예규(future ruling) 뿐만 아니라 현재 효력이 인정되는 예규(past ruling)까지 포함
 - 향후 생산될 예규는 3개월 이내 교환, 현재 효력이 있는 예규는 특정시점에 일괄적으로 교환하는 방안 논의 중

- 8 -

[3] BEPS 이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(기대효과) 조세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되어 국가간 공정한 조세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 마련
- (이행계획) 유해조세경쟁포럼(FHTP)에서 자발적 정보교환 대상으로 합의된 5개 범주의 예규(rulings)를 국가간 교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